

하반기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사업 안내문

- **신청기간 : 2026. 8. 3.(월) ~ 11. 30.(월)** ※ 선착순 접수(사업비 소진시 조기마감)
 ※ 의료(돌봄)서비스 이용 기간 : 2026. 1. 1.(목)부터 ~
 ※ 신청서류 구비완료 시 접수 순으로 진행되며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사업대상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본인 소유로 동물등록 완료된 개, 고양이를 기르는 2026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1인가구 포함)**
 -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자, 한부모가정 증명서 발급자 등 포함
 - 국가봉사동물(군견, 경찰견, 소방견 검역·마약 탐지견 등) 입양자는 소득 관계 없이 지원 가능
 - 사업대상자가 **본인 소유(신청자 명의)로 동물 등록하여 기르는 반려동물**에 한함.
 ※ 미등록 동물은 동물등록 후 이용한 서비스에 대해서만 지원 신청 가능(**고양이 포함**)
 - ※ **전년도(2025년도) 사업 참여 동물 중복 신청 가능**
 (2026년 상반기 사업 참여하여 최대로 지원 받은 동물 신청 불가능)
 - ※ **사업시행월(8월) 이전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2026. 1. 1. ~ 7. 31.**
 → 이용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소유 동물이 동물등록 완료된 상태로 수원시 관내 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소급적용 가능(아래 구비서류 참고)
- 지원한도 : 사업대상자 1명당 **본인 소유(명의)의 반려동물 2마리(상반기 포함)까지** 신청 가능
 - **마리 당 최대 160천원/320천원 이내**

의료·돌봄·장례서비스(최대 160천원)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최대 320천원)
총 비용이 200천원 이상인 경우 160천원 지원	총 비용이 400천원 이상인 경우 320천원 지원
총 비용이 200천원 미만인 경우 총 금액의 80%까지 지원	총 비용이 400천원 미만인 경우 총 금액의 80%까지 지원
ex) 200천원 이상 이용 → 160천원 지원 150천원 이용 → 120천원 지원	ex) 400천원 이상 이용 → 320천원 지원 360천원 이용 → 288천원 지원

- 사업내용
 - 의료지원 :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및 치료비(수술 포함) 등
 - 돌봄지원 : 반려동물 돌봄위탁비(최대 10일 기준/일 최대 2만원)
 - 장례지원 : 반려동물 장례, 화장비 일부 지원 등
 - 종합건강검진지원 : 7세 이상 노령 반려동물 종합건강검진비 등
- ※ 해당 지원 서비스 실제 이용 확인을 위하여 내역서 필요(서식 3)하며 사업대상자는 지원 서비스 이용 전 **수원시 관내**에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 또는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제73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위탁관리업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 후 서비스 이용하여야 함(업소 내 개설 등록증 등으로 확인 가능)
 ★ 장묘서비스는 '경기도 내 장묘 업체'만 가능

- 신청방법
 - ① 지원 사업 신청을 원하는 자는 본인이 사업대상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지 우선 확인
 - ② 의료·돌봄·장례 서비스를 이용한 후 신청서 등 서류(하단 표 참조)를 구비하여 사업기간 내에 사업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청구) : **방문 또는 등기우편**
 - 방문 접수시간 : 평일 9시 ~ 18시(점심시간 12시 ~13시, 토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 등기우편의 경우 봉투 겉면에 '2026년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사업 신청서' 기재
- ※ **신청 및 청구서(서식 1)에 반드시 자필서명 또는 도장 날인. 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 접수 인정이 되지 아니하며** 담당자 요청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함.

- 지원금 지급 : 신청 서류 검토 및 지원 적합 판정 후 지급(신청월 다음 달 지급 예정)
- 신청장소 및 문의 : 수원시 반려동물센터 동물정책팀(☎ 031-5191-3458)
- (주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로234, 수원시 동물보호센터 3층 사무실)
- 유의사항
 - 금년 경기도 타시군에서 동일 사업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받는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추후 중복 및 부정 지급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동일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구비서류

구분	서 류 명		비고	
공통 서류	①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 신청 및 청구서	서식 1	
	②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 2 (제출 시, 공통서류 6번 및 추가서류 생략 가능)	
	③	서비스 이용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서식 3	서비스 이용 기간 (2026. 1. 1. ~) 하단 ‘소급적용 대상자’ 참고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서식 4	
	⑤	본인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압류 통장 x)		
	⑥	동물등록증 사본	개, 고양이 모두 발급	
		주민등록표 등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추가 서류	일반가구 1인가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피보험자로 등재된 가구원별 각각 발급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아래 서류 중 택 1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보수지급명세서 -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국민연금지급내역서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장 발행)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생계)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거, 의료, 교육급여, 보장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확인서 별도 발급분 제출	
	한부모 가구	한부모가족 증명서	-	
	국가봉사 동물 입양자	국가봉사동물 입양 증빙이 가능한 서류	제출 시, 공통서류 ⑥번, 추가서류 제출 불필요	
소급적용 대상자		주민등록표 초본(주소지 이력 포함)	2026. 8월 이전 서비스 이용건 신청 시 제출 (이용기간 : 2026. 1. 1. ~ 7. 31.)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추가서류 구비 요령

〈사례1〉

신청자(주민등록표상 1인 가구: 신청자)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신청자 동의서 1부

〈사례2〉

신청자(주민등록표상 1인 가구: 신청자)가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아버지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신청자 동의서 1부, 아버지 동의서 1부

〈사례3〉

신청자(주민등록표상 4인 가구: 신청자, 배우자, 자식1, 자식2)가 배우자와 자식들의 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신청자 동의서 1부

〈사례4〉

신청자(주민등록표상 4인 가구: 신청자, 배우자, 자식1, 자식2)가 자식들의 건강보험 부양자이고, 배우자는 지역가입자로 별도로 납부하고 있는 경우

->신청자 동의서 1부, 배우자 동의서 1부

〈사례5〉

저소득층(생계급여 수급)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 동의서 1부

〈사례6〉

저소득층(생계급여 제외 수급)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 동의서 1부,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1부

〈사례7〉

저소득층(차상위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 동의서 1부, '차상위 계층 확인서' 제외 서류는 별도 발급분 필요

★선착순 마감 여부 및 증빙자료 사전검토를 위해, 전화 문의 필요★

★문의번호: 031-5191-3458

※ 참고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 (단위: 원)

구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 8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959,198원씩 증가(8인가구 : 10,474,348원)

○ 기준중위소득 85% 초과 ~ 100% 이하 건강보험료 수준 기준금액 (단위: 원)

소득구간	인원수	보험료		
		직장가입자 (근로자 +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외)	혼합가입자 (한 가구 내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기준 중위소득 85% 초과 100% 이하	1인	92,180	20,950	-
	2인	150,960	87,970	153,910
	3인	192,650	137,180	197,190
	4인	233,480	177,040	240,450
	5인	271,660	226,340	280,990

※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월 기준)가 해당 보험료 이하일 시 사업대상자 해당

○ 돌봄 취약가구 상세 기준

구 분	기준 (근거법령 등)
저소득층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1인 가구	「경기도 1인가구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1인 가구
일반 가구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

○ 구비서류 관련 안내

- 동물등록증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인쇄 또는 주소지 구청 경제교통과 산업팀 문의
- 건강보험자격(특실)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문의
-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등 : 국민연금공단(1355) 문의
- 소득금액증명서 : 주소지 세무서 문의